

## 와이티엔·연합뉴스티브이,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「방송법」 위반으로 시정명령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위원장 김종철)는 15일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8월 개정 「방송법」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토록 규정한 「방송법」 제20조를 위반한 와이티엔(YTN)과 연합뉴스티브이(연합뉴스TV)에 대해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.

이와 함께 와이티엔(YTN)에 대해서는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「방송법」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.

이는 지난 12일 양사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결과, 연합뉴스티브이(연합뉴스TV)는 노사 합의를 토대로 한 노사 양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·운영 의지와 계획이 확인되었으나, 와이티엔(YTN)의 경우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등 노사 양측의 법 이행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지 못한 것 등에 따른 것이다.

방미통위 위원들은 「방송법」이 규정하는 3개월이 도과함에 따라 방미통위가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 시 같은 법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 검토 예정임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, 현재까지 양사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한편,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와이티엔(YTN)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.

아울러 와이티엔(YTN) 언론노조가 요청한 와이티엔(YTN)의 「방송법」 위반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관련해 노사 양측에 구체적 사실·행위 등 관련

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,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.

붙임. 시정명령(안) 및 관련 법령

담당 부서	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권희수 (02-2110-1430)
		담당자	사무관	김가영 (02-2110-1432)



**□ 시정명령(안)****○ (주)연합뉴스티브이**

-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는 2026. 7. 31.까지 「방송법」 제20조 제2항, 제3항 및 제4항의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.

**○ (주)와이티엔**

- 주식회사 와이티엔은 2026. 7. 31.까지 「방송법」 제20조 제2항, 제3항 및 제4항의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.  
- 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「방송법」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.

**□ 관련 법령**

**방송법 제20조(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) ②**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.

**③**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(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**④**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, 구성방식,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,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 칙 <법률 제21043호, 2025. 8. 26.> 제3조(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및 보도책임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**방송법 제99조(시정명령 등) ①**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·중계유선방송사업자·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2. 이 법 또는 허가조건·승인조건·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

**방송법 제18조(허가·승인·등록의 취소 등) ①** 방송사업자·중계유선방송사업자·음악유선방송사업자·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·승인·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·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. (후략)

9.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